

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

의안번호	회의차수	회의일자	제 의 자
20	9	1992. 4. 16	홍재조순

의안 「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」개정

의결사항 「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」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.

제외관계
법규조항 한국은행법 제7조

제외취지 유통시장의 개방 확대 등 여건변화에 상응하여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유통효율제고를 위한 시장근대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시장개설자가 재래시장의 신축 또는 증·개축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도록 전기와 같이 의결할 것을 제외함



< 참고사항 >

제의관계 법규조항

한국은행법 제7조

①

(생 략)

②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이 법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통화신용의 운영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명백히 부여된 기타 기능과 권한을 행사하며 한국은행의 업무, 운영, 관리에 관한 지시감독을 한다.

③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규정, 지시를 발할 수 있다

④~⑥

(생 략)

「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」 개정(안)

연	영	개	정	(인)	비	고											
제1조 ~ 제12조	(생 략)	제1조 ~ 제12조	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
	(신 설)		부 칙														
			이 규정은 1992. 4. 16 부터 시행한다.			○ 시행일자 명시											
< 별 표 >	여 신 금 지 부 문	< 별 표 >	여 신 금 지 부 문														
1~2.	(생 략)	1~2.	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
3. 다음의 업종에 대한 여신		3. 다음의 업종에 대한 여신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한국표준산업분류 표안 제 1 부 편 제</th><th>업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70</td><td>(생 략) 부동산업 (단 여왕건물 및 서민주택 임대업은 제외)</td></tr> <tr> <td></td><td>(생 략)</td></tr> </tbody> </table>	한국표준산업분류 표안 제 1 부 편 제	업	70	(생 략) 부동산업 (단 여왕건물 및 서민주택 임대업은 제외)		(생 략)	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한국표준산업분류 표안 제 1 부 편 제</th><th>업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70</td><td>(현행과 같음) 부동산업 (단 공장건물 및 서민주택 임대업에 대한 여신과 「도·소매업진흥법」 제6조에 의한 시장개설자의 당해시장임대업에 대한 시장신축 또는 중·개축자금은 제외)</td></tr> <tr> <td></td><td>(현행과 같음)</td></tr> </tbody> </table>	한국표준산업분류 표안 제 1 부 편 제	업	70	(현행과 같음) 부동산업 (단 공장건물 및 서민주택 임대업에 대한 여신과 「도·소매업진흥법」 제6조에 의한 시장개설자의 당해시장임대업에 대한 시장신축 또는 중·개축자금은 제외)		(현행과 같음)			○ 시장근대화사업 추진 시장개설자의 일부 시설자금을 여신금지 부문에서 제외
한국표준산업분류 표안 제 1 부 편 제	업																
70	(생 략) 부동산업 (단 여왕건물 및 서민주택 임대업은 제외)																
	(생 략)																
한국표준산업분류 표안 제 1 부 편 제	업																
70	(현행과 같음) 부동산업 (단 공장건물 및 서민주택 임대업에 대한 여신과 「도·소매업진흥법」 제6조에 의한 시장개설자의 당해시장임대업에 대한 시장신축 또는 중·개축자금은 제외)																
	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